

21세기 시장경제와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한 서울 경쟁포럼 2001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3일(화요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미국·캐나다·호주 등 12개국 대표자와 국내의 경쟁정책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시장경제와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한 서울 경쟁포럼 2001을 개최하였다. 「세계화 시대의 신경제질서」와 「세계화와 경쟁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유자노프 러시아 독금부장관과 프레데릭 제니 프랑스 경쟁위 부위원장, 김진국 건양대 무역학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신광식 박사 등 경쟁당국 대표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제1회의 「세계화 시대의 신경제질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건양대 무역학과 김진국 교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모델인 미국경제의 특징으로 건실한 재정·통화정책과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주주중심의 기업지배구조 및 기술혁신 등을 언급하였다. 김 교수는 이 미국식의 세계화 모델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기 때문에 대안의 하나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다자간 경쟁규범의 제정이 필요하며 양자협정은 보완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주로 실시해 온 보호무역적인 반덤핑조치 문제는 경쟁법 다자규범화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캐나다 경쟁위 안드레 다운스 부상임위원은 글로벌 환경에서의 기업결합, 국제적 카르텔, 기술혁신, 국제적 협력이라는 4가지 주제로 자국의 경쟁정책을 설명하였다. 특히 안드레 다운스는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첫째, 이미 존재하는 양자협정을 통하는 방법, 둘째, OECD, UNCTAD 및 APEC과 같은 지역적·다자간 포럼에서 토론을 통하는 방법, 셋째, WTO협정의 교

섭을 통해서 행하는 방법, 넷째, 개도국뿐만 아니라 업계와 법조계를 대표하는 단체 등도 포함하는 GCF(Global Competition Forum)활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GCF활동을 통한 접근방법이 경쟁당국간의 합의를 위한 실질적인 기초를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홍동표 연구위원은 IT산업의 비약적 발전 등으로 독점기업의 등장 가능성이 이전보다 크고 시장지배와 초과이윤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반면 반독점 사례에 대한 경험과 판정 결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정책의 신중한 운영을 요구하였다. OECD 버나드 조 필립스 경쟁법·정책 분과장은 반덤핑 문제는 수출국 정부에 의한 국내시장 보호조치나 수출국내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방지에 따른 독과점적 이윤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덤핑의 경우는 제재되어야 하므로 반덤핑조치가 반드시 경쟁정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공정위 허선 정책국장은 한국 정부는 WTO 경쟁리운드의 확산을 지지하되 기업활동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이루어지고 경쟁법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양자간·다자간 협정을 통해 이 차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프랑스와 수티 프랑스 경쟁위 다지통상 심사관은 GCF와 OECD가 통합되어야 개도국의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개도국의 포섭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 서로간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장승화 교수는 각국마다 경쟁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선진국의 경쟁법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국제경쟁규범의 양자간 접근방식은 양국간 경쟁법의 실제 수준이 비슷해야만 서로 호혜적일 수 있으므로 다자간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공정위에 대하여는 대외적으로 다자간 협정을 옹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실제적 기초와 집행수단을 'Global Standard' 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헨크 스피어 호주 ACCC 고문은 호주 경쟁당국은 다자간 규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양자간 접근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다자간 경쟁규범 제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제2회의 「세계화와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신광식 선임연구위원은 첫째, 공정거래법제도가 'Global Standard'와 국제적 수준에 맞는 경제적 논리와 법 이론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새로운 경제환경 하에서 생산자 위주의 산업정책적 발상을 극복하고 소비자 위주의 경쟁정책 본연의 기본이념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력집중 완화와 거래의 공정화라는 목적은 경제효율 내지 소비자후생증진이라는 목적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베르토 하임러 이태리 경쟁위 경쟁법 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적정한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카르텔에 대한 벌금은 년 매출액의 2배 이상이 되어야 신고로서의 이익이 카르텔 유지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신고자의 사면프로그램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빗 코우 IMF 서울사무소장은 IMF 이후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투자자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호채무보증, 부당내부거래의 제재로 시장의 투명성 회복에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윤호 LG

경제연구원 원장은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글로벌 기업간의 합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때 적용될 수 있는 글로벌한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며,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법무법인 우방의 윤호일 변호사는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방향에 대해 거래의 공정성보다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정되어야 하며 경성카르텔의 경우 법 집행의 엄격화를 위해 사소제도·집단소송제도·사면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한수 CBF 금융그룹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재벌개혁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재벌문제와 정부의 개입 중 어느 것이 더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역을 넓히면 정부의 산업정책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사히로 무라카미 일본 요코하마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카르텔의 엄격한 제재에 대하여 개인 처벌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경쟁정책」에 관한 세미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13일(금) 신라호텔에서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경쟁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서 이규역 아주대 경영대 교수는 인터넷경제의 특성에 대하여, 인터넷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의하여 정보 흐름의 질과 양이 확충된다는 유량적인 면보다도 20세기를 관통하여 왔던 포드식 대량생산체제에 일본식의 신축적 범위의 경제성을 중첩시키면서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바탕으로 다수 소비자의 개별적 욕구를 신속·저렴하게 충족하는 고객지향 대량생산체제로 변형시켰다는 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트워크 산업의 기술 선택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에 기인하는 고착(lock-in)현상 및 사소한 이점이 시장의 궁극적인 자원배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 때문에 외부의 정책적 간섭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로의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 네트워크 외부경제(network externalities)효과로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네트워크의 가치는 커지고 새로운 사용자는 각각 사적 혜택을 얻음과 동시에 기존의 사용자에게도 외적 혜택을 주지만 네트워크는 구매자가 자신의 구매가 부여하는 사회적 혜택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규모가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미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는 결국 정책적 후원이 없는 한 원초적으로 이점을 갖는 기술이 산업의 표준으로 경도(tip)되고 일단 시장이 하나의 표준으로 경도 되면 장기간 이러한 표준이 고착될 수 있으므로 반경쟁적 결과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가 구제품과 호환성이 없는 신제품을 구입하면 구제품에 대한 기존의 투자를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는 전환비용(switching cost) 때문에 호환성을 높이고 전환의 비용을 낮추는 표준화를 경쟁정책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표준설정에 대한 설정과정상의 하자 방지와 표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배타성을 제거하는 것에 경쟁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현옥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기업형태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이 기업에게 미친 파급효과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대변되어진다고 언급했다.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로서 첫째,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등 보완요소들의 결합을 통한 가치창출, 둘째, 구매자나 공급자들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것이 용이, 셋째, 거래의 신속성, 넷째, 높은 정보통신기술 의존성 등의 특징을 가지며, 기업간 거래로서의 특징으로 첫째, 거래요인이 복잡하고 자산의 전속성이 높아서 협력업체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 둘째, 구매자와 공급자 양방간 탐색비용이 높으므로 중개기능이 중요, 셋째, B2B 전자상거래는 암묵적 담합의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후생을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 존재 등을 들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내재되어 있는 네트워크 규모의 확대에 대한 유인은 전자상거래시장의 발달로 이어지고 있어서 주로 전자상거래시장과 관련된 기업형태가 문제된다고 언급했다. 즉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 기존 전자상거래시장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자상거래시장을 만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특정 기업의 규모나 참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력 등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하여 권명중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네트워크 경제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진입이 어려워 독과점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면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기도 전에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경쟁정책을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 제고효과는 기업들이 완전정보를 갖게 됨을 의미하므로 1차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고 다만 정보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외국의 경쟁정책동향에 대하여 서정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경제효율성 제고 효과와 경쟁제한적 효과를 동시에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을 적용하고, 법 적용 대상이 다양하고 판단의 문제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외국의 동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경쟁정책에 대하여 흥동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B2B 전자상거래시장의 성공요인으로 원활한 거래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규모 확보, 구매 기업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객관적인 운영자 확보 및 호환성의 확보라고 지적하였으며, B2B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불공정경쟁 유형은 크게 수요독점, 정보공유에 의한 담합, 배타적 거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전자상거래 연구센터 조영희 박사는 초기 단계인 기업간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경쟁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경쟁법과 합리의 원칙에 의한 가이드라인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B2B에 맞춘 새로운 경쟁정책을 고려하기보다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유지하면서 적용을 변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